



시 보



제1686호 2025. 3. 24. (월)

고시 · 공고

- 2025년 목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2
-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
-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1
-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2025년 목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목포시 대성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4일

목 포 시 장

1. 책임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대성초1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대성동 212번지 일원 (대성초등학교 및 양동우체국 일원)

나. 사업량: 1,262필지 / 148,101.0㎡

4. 위탁 업무

가.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나.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다. 경계설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라.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측량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마. 지적재조사지구의 내외 경계 확정, 측량성과물 작성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061-270-3417) 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 입 법 예 고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 3. 24.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 개정이유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의 방법 및 내용 구체화(안 제26조제1항)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참석 경비 지급(안 제26조제6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6.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 해당없음

8. 예산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4. ~ 2025. 4. 14. (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4일 18:00까지 목포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

- 주소 : (우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 전화 : 061-270-3328, 팩스 : 061-270-3591
- 이메일 : jsyoon1218@korea.kr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3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1】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위한**”을 “**위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제
3항 각 호의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 심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생략) 나.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u> 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 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 3. (생략) ③ ~ ⑨ (생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1. (생략) 2.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u> 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u> --- ----- ----- -----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 ----- ----- ----- -----. 1. (현행과 같음) 2.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u> ----- ----- -----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26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6조(교육) ① -----

----- 위한 다음 각 호의 -----
-----.

1.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삭 제>

<삭 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제3항 각 호의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 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⑤ 시장은 제1항-----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3. 24.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3. 주요내용
 - 센터의 업무를 규정, 전문연구기관 지정 대비 기능 명시 (안 제3조)
 -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근거 마련 (안 제4조)
 - 센터 자립시까지 재정지원 필요하여 지원 근거 마련 (안 제6조)
 - 위탁 타당성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구성 (안 제9조)
 - 수탁기관 계약시 자체운영규정 제정하여 세부 운영 계획 마련 (안 제13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1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4. ~ 2025. 4. 14. (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4일 18:00까지 목포시장 (전략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전략산업과 (에너지신산업팀)

- 주소 : (우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3층 전략산업과
- 전화 : 061-270-3673, 팩스 : 061-270-4310
- 이메일 : ydydo@korea.kr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전략산업과 (☎061-270-3673) 로 문의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이하“센터”)는 목포시 허사로33번길 48-4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풍력 관련 대형 구조물의 제작·선조립·하역·물류관리 지원
2. 선박·항만·단지 모니터링·유지보수 등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3.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4. 해상풍력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5. 해상풍력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의 향상 지원
6.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7. 해상풍력 산업·기술의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추진
8.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배후시설 등 지원
9.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지원
10.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 지원
11. 센터 내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 활동
12. 센터의 공간 임대, 시설 및 장비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상풍력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전라남도 및 목포시 출연기관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및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센터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목포시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 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정산 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민간 위탁의 타당성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 수탁자는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 수탁자는 센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4.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향사랑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 상위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반영 및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활동, 공모전 개최,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부활성화 지원 신설(안 제24조)
-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 발송, 감사장 및 감사패 전달, 기부자 명단 공표, 시

행사 초청, 시책이나 홍보,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부자 예우 신설(안 제25조)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안 제26조)
-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 사무 위탁 조항 신설(안 제2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4.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4. ~ 2025. 4. 14. (21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4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우]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061-270-3579), 직접 방문 등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1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당한다”를 “충당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기부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등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 등 발송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시 누리집과 홍보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5. 시정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관한 자료 등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포상) 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행사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영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u><신 설></u>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 법 제11조제5항----- ----- ----- ----- ----- ----- ----- ----- ----- ② ----- ----- ----- ----- ----- ----- ----- ----- ----- 충당할 수 있다. 제24조(기부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활동

<신 설>

<신 설>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등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
할 수 있다.

제2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 등 발송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시 누리집과
홍보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5. 시정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
기금 사업에 관한 자료 등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포상) 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
단체·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신 설>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 행사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